

가정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안: 치료적 사법이념의 관점

박 광 배[†]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지 형 기
대검찰청 심리분석실

가정폭력은 아동기 경험에 의하여 폭력이 행동 레파토리로 학습된 남성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존감을 손상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이고, 결혼생활의 조화와 사회적 지지는 이 스트레스를 증폭하거나 완화시키는 완충역할을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가진다. 가정폭력 사범의 교정을 위한 한국의 현행 제도는 교정과 치료가 교도행정기관에 의해 주도되므로 환자의 입장에서는 치료라기보다 대체형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 효과를 낙관하기 어렵고, 지역사회에서 낙인효과를 유발하여 재적응을 어렵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대처는 치료적 사법이념의 패러다임을 제도적 대처방안으로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치료적 사법이념의 핵심은 법원이 지역사회 및 다른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범죄자의 치료와, 교정, 그리고 갇생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어 : 가정폭력, 사회적 자존감, 교정, 치료적 사법이념

[†] 교신저자 : 박광배,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 48,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kwangbai@cubcc.chungbuk.ac.kr

한국에서는 1997년 11월 정기국회 의결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 중에서 본 논고가 주목하는 것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다.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서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이 그 목적이다(제1조).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한다는 목적으로 입법된 '특례법'의 주요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기관, 가정폭력 상담소 등의 장은 신고해야하고, 피해자는 가정폭력의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제4조), ②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격리와 접근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제8조), ③ 검사는 사건의 성질, 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를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제9조), ④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한다(제11조), ⑤ 법원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으로 송치할 수 있다(제12조), ⑥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처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16조), ⑦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피해자의 진술권 등을 보장한다(제33조), ⑧ 판사는 보호처분이 필요하

다고 인정한 때에는 접근행위의 제한,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제40조), ⑨ 피해자가 받는 물적 피해나 치료비, 부양료에 대하여는 신속한 민사 처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과 유사한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제56조, 제61조), ⑩ 보호처분 중 접근행위제한과 친권행사제한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호처분의 불이행죄를 신설하여 처벌한다(제63조).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한국의 법제도는 그 목적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가정폭력 범죄자에 대한 교정 및 환경조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와 판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가정폭력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주된 내용은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그리고 상담위탁이다. 보호처분의 종류 중에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는 처벌적인 의미가 강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되고,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그리고 상담위탁은 치료적인 의미가 포함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치료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내용 중에 수강명령과 보호관찰은 그 과정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의 교정을 위한 개입프로그램이 부분적으로 활용되기는 하지만, 보호관찰 직원 1인당 피보호관찰자 377 명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법무부 보호관찰소 홈페이지: <http://www.probation.go.kr>)에서는 가해자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개별화된 교정과 치료가 어렵고, 국가공권력에 의한 단기적(6개월) 개입이므로 환자의 입장에서 치료가 아니라 처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 효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반면에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치료위탁이나 상담위탁의 처분을 받는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수탁기관 중의 하나인 '수원 여성의 전화'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2001년에 상담한 사례는 총 790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담은 한 건도 없었고, 2002년에 상담한 사례는 총 1,317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담은 9건에 불과하였으며, 2003년에 들어서 5월까지 총 1,280건의 상담이 있었으나 그중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담은 한 건도 없었다(<http://www.suwonhotline.or.kr>).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실제로 치료위탁이나 상담위탁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문 이유 중의 하나는 치료와 상담을 위한 재원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일 수 있다. 피해자가 치료위탁 처분이나 상담위탁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상담과 치료를 위한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고(제 48조 1항, 판사는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사전에 예납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 48조 2항)). 그러나 위에서 설명되었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대다수가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치료와 상담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치료위탁이나 상담위탁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구색 맞추기를 위한 형식적인 조항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재정능력이 없는 경우, 치료와 상담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지만(제 48조 1항), 정부 또한 예산을 책정하여 확보한 바 없다(정춘숙, 1999).

'특례법'에 명시된 보호처분은 피해자의 폭력에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를 추가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를 행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법 현실이 가정폭력 범죄자의 교정에 대하여 비교

적 무성의한 이유 중의 하나는 추측컨대 가정폭력의 발생기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거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본 논고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처벌, 격리, 권리의 제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단기적 개입에 치중된 현행 법제도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조망할 때 오히려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증가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과, 가정폭력을 최소화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가 피해자의 교정과 치료에 치료적 사법이념(Therapeutic Jurisprudence)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가정 내 폭력행동의 원인

가정폭력의 기제와 원인에 관한 거의 모든 실증적 연구들은 상관관계에 의존하므로, 이 연구들의 결과와 자료들로부터 가정폭력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Tolman & Bennett, 1990). 그러나 이 연구들은 가정폭력의 기제와 원인을 이해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4종류의 요인들에 주목한다. 첫째는 사회적 요인이고, 둘째는 생리화학적 요인이며, 셋째는 심리적 요인이며, 넷째는 아동기의 경험이다(Anderson, 1997; Hotaling & Sugarman, 1986; Kalmuss, 1984; McKenry et al., 1995; Schuerger & Reigle, 1988). 이 4종류의 요인들은 가정폭력에 대한 소위 '위험요인(risk factor)'들이다. 즉, 이 4종류의 요인들은 가정폭력과 상관관계가 있고, 따라서 가정폭력의 발생에 대한 통계적 예측력을 가지는 요인들이다.

본 논고의 관심은 가정폭력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있다. 왜냐하면 원인이 규명되어야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합리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관관계와 통계적 예측력이 있

는 요인일지라도 ‘원인’이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리면 체온이 증가하고 기침을 하게 되므로, 기침은 체온의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고 또한 예측력을 가지지만, 기침이 체온의 증가에 대한 원인이 아닌 것과 같다. 가정폭력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정폭력의 위험요인에 관한 상관연구들의 결과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가정폭력의 일차적 원인을 추정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존감을 손상하는 부정적인 사회적 경험’이 가정폭력의 일차적 원인으로 추정된다.

사회적 요인

가정폭력을 유발하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사회적 스트레스(social stress)와 경험사건(life events)의 역할에 집중된다(Gelles, 1987, 1993). 이 관점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사회적 스트레스와 높은 관련성을 가지며, 부정적인 경험, 특히 실직이나 사업실패, 반복되는 취업실패, 경제적 무능력,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열등감 등과 같이 전통적인 남성의 지위를 위협하는 사회적 경험은 배우자 학대와 매우 높은 관계를 가진다(Gelles, 1989; Steinmetz, 1987). 즉,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존감을 해치는 부정적인 사회적 경험을 하는 남성은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파생되는 스트레스에 의해 배우자 학대와 같은 폭력적인 행동을 가정 내에서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스트레스 이론’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이론적 관점은 가정폭력 행위를 일종의 스트레스 반응으로 보는데,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은 경제적 상황, 결혼생활, 사회적 지지, 알코올 남용 등의 요인들에 의해 매개 혹

은 조절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경제적 상황이 나쁘고, 결혼생활이 불행하며, 사회적 지지체계가 빈약하고, 알코올을 남용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사회적 경험으로부터 파생되는 스트레스에 대하여 폭력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스트레스 이론은 실직이나 사업실패, 반복되는 취업실패, 경제적 무능력,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열등감 등과 같이 남성의 자존감을 해치는 부정적인 사회적 경험을 가정폭력의 일차적 원인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그 일차적 원인이 존재할 때, 그 원인에 의해 폭력적인 스트레스 반응이 외현적으로 발현하는지의 여부는 몇 가지 중요한 ‘매개요인’과 ‘조절요인’들에 의해 좌우된다.

결혼생활의 조화는 그 중요한 매개요인 중의 하나이다. 여권주의자들은 남성에 의한 배우자 폭력이 결혼관계에서의 남성의 우월한 지위가 위협받고, 그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강제적 통제(coersive control)’의 시도로 본다(Yllo, 1993). 특히, 한국사회와 같이 여성의 경제/사회활동이 보편화되지 않고, 따라서 남성의 경제력과 사회적 역량이 가정 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시되며, 사회/경제적으로 유능한 남자가 여성들의 바람직한 결혼상대로 당연시되는 사회에서는 실직이나 사업실패 등을 경험하는 남편들은 곧바로 ‘바람직하지 않은 배우자’로 전락되는 심리적 역동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관계에서의 남성의 우월한 지위에 대한 위협 또한 남성의 실직, 사회적 실패, 상대적 박탈감 등과 같은 부정적인 사회적 경험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남성의 지속되는 실직상태 혹은 경제적 무능력 등과 같은 부정적인 사회적 경험에 의해서 결혼생활에 부조화가 생기면 분노와 좌절감이 증가하고, 가정 내에서 대화와 타협의 질이 악화되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폭력성이 나타날 수 있다.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는 남성의 자존감을 해치는 부정적인 사회적 경험이 가정폭력을 유발하는 인과적 경로를 완충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요한 조절요인이다. 남성이 자존감이 손상되는 부정적인 사회적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가족, 친척, 친구, 동료들로부터 위로와 도움을 받고, 그러한 경험에 의한 스트레스가 완화되면 폭력적인 형태의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가정이 친구, 친척, 동료, 주민, 등의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수록 그 가정 내에서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은 감소한다(Milner & Chilamkurti, 1991; Straus, Gelles, & Steinmetz, 1980).

가정폭력은 부유층에서도 드물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는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경우에 더 빈번히 발생한다.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가정폭력과 관련된 많은 요인들에 대하여 일종의 포괄적인 공변인(covariate)으로 작용한다고 생각된다(McKenry, Julian, & Gavazzi, 1995).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면 부정적인 사회적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정적 사회경험이 유발하는 스트레스의 강도 또한 높아지며, 위에서 언급한 결혼생활의 조화나 사회적 지지 등의 매개변인과 조절변인의 취약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생리화학적 요인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관심을 모으는 생리적 인자는 남성호르몬(testosterone)과 세로토닌(serotonin)이다. 남성호르몬과 세로토닌은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대인범죄와 폭력행동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Meyer-Bahlburg, 1981; Archer, 1991;

Dabbs et al., 1987, 1988; Rada, 1978; Booth & Dabbs, 1993; Julian & McKenry, 1989; Burrowes, Halles, & Arrington, 1988; Coccaro et al., 1989; Virkkunen & Linnoila, 1993; Winslow & Miczek, 1985; Winslow, Ellingboe, & Miczek, 1988), 그 때문에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중요한 인과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다른 대인범죄를 범하지 않고, 폭력적인 행동을 가정 밖에서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다(Mankowski, Haaken, & Silvergleid, 2002). 따라서 현재로서는 남성호르몬과 세로토닌에 의해 가정폭력이 유발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그러한 생리적 요인들이 특정적으로 가정폭력에 기여한다는 가설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관심을 모으는 또 하나의 생리화학적 인자는 알코올이다(Kantor & Straus, 1987). 알코올도 남성호르몬이나 세로토닌과 마찬가지로 폭력적 행동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abbs & Morris (1990)는 남성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한 남성들이 알코올 남용과 배우자 학대 모두에서 취약성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남성호르몬이 알코올 남용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고,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가정폭력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동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Udry, 1989). 반면, 알코올은 남성호르몬의 분비와 작용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Lindman et al., 1992). 따라서 알코올, 남성호르몬, 그리고 가정폭력의 관계에는 많은 다른 요인들이 직간접적으로 혼재할 가능성이 높다.

알코올과 폭력성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진다는 실증적 증거는 미약하다(Collins, 1986; Fagan, Barnett, & Patton, 1988; Pernanen, 1991). 알코올이

연루된 폭력행위의 대부분에서는 알코올 이외에도 폭력행위를 촉발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함께 공존한다(Martin, 1992). 경제적 어려움, 부부관계의 불화, 가정의 우환 등의 폭력행위를 촉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부재할 때 순수하게 알코올에 의하여 가정폭력이 행해질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알코올이 가정폭력의 원인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단적으로 말해서, 술을 많이 마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가정 내에서 폭력적이지 않다. 알코올과 가정폭력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알코올과 가정폭력의 상관관계는 소위 '의사관계(spurious relationship)'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이 도출된다(Gelles, 1993b). 그 이유는 가정폭력과 알코올의 상관관계는 앞서 기술된 사회적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과 가정폭력은 공히 남성의 자존감을 해치는 부정적인 사회적 경험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관점이 설득력이 높다.

심리적 요인

가정폭력을 유발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충동성(impulsivity), 타인에 대한 의심(suspicion of others), 반사회성 성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그리고 강박성(compulsivity)의 역할에 집중된다(O'Leary, 1993; Abram, 1989; Hotaling & Sugarman, 1986). 그러나 가정폭력과 심리적 요인들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가지는 한 가지 문제점은 충동성, 타인에 대한 의심, 반사회성 성격장애, 그리고 강박성, 등의 심리적 요인들에 대한 정의와 측정에 타인에 대한 폭력적 언어 및 행동이 포함되므로 과연 그러한 심리적 요인들이 가정폭력에 대한 원인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가정폭력과

심리적 요인들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제시하는 상관관계는 '기각가능성(falsifiability)'이 거의 없는 추정치들이고, 따라서 인과관계의 방향을 변별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적 언어와 행동에 의해서 가해자는 충동적이고 반사회적이며 타인에 대한 의심과 강박증을 가진 사람으로 판단될 수 있다.

가정폭력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들은 앞서 사회적 스트레스 이론이 전제하는 남성의 자존감을 해치는 부정적인 사회적 경험의 영향을 매개 혹은 완충하는 요인들이라는 관점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이다(McKenry, Julian, & Gavazzi, 1995). 즉, 남성의 실직, 반복되는 사회적 실패, 지속적인 상대적 박탈감 등과 같은 부정적인 사회적 경험에 의해 타인에 대한 불신과 피해의식이 생겨나고, 충동적이고 강박적인 심리상태가 조성되며, 반사회적으로 보이는 폭력적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이 강건해지면 비록 자존감을 파괴화시키는 부정적인 사회적 경험을 하더라도 폭력적인 스트레스 반응이 억제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기의 경험

폭력적인 가정환경에서 아동기를 보낸 사람은 성인이 되었을 때 폭력적인 행동양식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Cate et al., 1982; Kalmuss & Seltzer, 1986; Lane & Gwartney-Gibbs, 1986; Makepeace, 1981). 폭력적인 가정환경에서 아동기를 보낸 사람이 성인이 되어 폭력적인 행동양식을 보이게 되는 기제는 일반적으로 사회학습이론에 의해 설명된다(Seltzer & Kalmuss, 1988). 사회학습이론의 관점에 의하면 아동기에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폭력은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의 "행동 레파토리(behavioral repertoire)"가

된다는 것이다.

성인기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하여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양식을 보인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 접촉을 회피하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폭력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에 어떤 반응양식을 보이는가의 여부는 어린 시절부터 학습되고 습관화된, 혹은 익숙해진 행동 레파토리가 무엇인가에 달려있다. 그런데 폭력적인 가정환경에서 아동기를 보낸 사람은 폭력적인 행동이 학습된 행동 레파토리 중의 하나이고,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였을 때 습관적으로, 혹은 부지불식간에 폭력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쉽다는 것이다.

폭력적인 가정환경에서 아동기를 보낸 사람에게 폭력적인 행동이 하나의 행동 레파토리로 학습된다는 견해를 강력히 지지하는 연구가 있다. Bevan & Higgins(2002)는 남성 가정폭력 사범 36명을 대상으로 어떤 형태의 아동기 폭력경험이 성인기에 나타나는 가정폭력 행동과 높은 관계를 가지는지를 파악한 결과, 본인이 아동기에 직접 경험한 신체적 학대의 여부는 성인기의 가정 내 폭력행동에 대하여 직접적 효과(예측력)를 가지지 않는 반면, 아동기에 이루어진 가정폭력의 목격경험(witnessing family violence)과 방임경험(childhood neglect)은 성인기의 가정 내 폭력행동에 대하여 강력한 직접적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아동기에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폭력은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남성의 자존감을 해치는 부정적인 사회적 경험이 폭력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는 것을 조절하는 일종의 상호작용 요인인 것으로 생각된다(Farrington, 1986; Straus, 1980; Straus, Gelles, & Steinmetz, 1980). 즉, 폭력적인 가정환경에서 아동

기를 보낸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부정적인 사회적 경험을 하게 되면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날 개연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폭력적인 행동이 하나의 행동 레파토리로 학습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비폭력적인 가정환경에서 아동기를 보낸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부정적인 사회적 경험을 하는 경우에는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날 개연성이 높지 않은데, 그 이유는 폭력적인 행동이 하나의 행동 레파토리로 학습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요약: 가정폭력의 일차적 원인

남성들에 의한 가정폭력과 관련된 요인들은 크게 사회적 요인, 생리화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그리고 아동기 경험으로 구분된다. 가정폭력에 대한 이 요인들의 역할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가정폭력은 일차적으로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존감을 해치는 부정적인 사회적 경험을 하는 남성들의 스트레스 반응이고, 이 스트레스 반응이 실제 폭력행동으로 외현화되는 과정에서 남성호르몬, 세로토닌, 그리고 알코올 등의 생리화학적 요인들과 충동성, 타인에 대한 의심, 반사회성 성격장애, 그리고 강박성, 등의 심리적 요인들, 그리고 아동기 경험이 매개되거나, 조절기능을 하거나, 혹은 단순히 공변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생리화학적 요인들과 심리학적 요인들이 가정폭력을 유발하는 정확한 인과론적 기제나 그 요인들의ダイナ믹한 상호관계는 매우 불분명하고 복잡하다. 남성호르몬과 세로토닌이 폭력성과 깊은 관계를 가지지만, 가정폭력 사범들 중에 다른 폭력범죄를 함께 범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지 않으므로 이러한 생리적 요인들이 가정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알코

올이 연루된 폭력행위의 대부분에서는 알코올 이외에도 폭력행위를 촉발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함께 공존하므로 알코올이 폭력행동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만약 알코올이 폭력행동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알코올 이외에 폭력행위를 촉발할 수 있는 다른 사회적 요인들이 없는 상황에서도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어야 한다). 알코올 남/오용은 가정폭력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단지 가정폭력과 공변하는 또 하나의 스트레스 반응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심리적 요인들은 그 조작정의들이 가지는 순환논리 때문에 적어도 횡단적 연구에 의하여 가정폭력의 원인인지, 결과인지를 추정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면에 아동기의 폭력경험은 남성의 부정적인 사회적 경험이 폭력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는 것을 조절하는 일종의 상호작용 요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폭력의 원인에 관한 연구들로부터 유추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존감을 해치는 부정적인 사회적 경험'이 가정폭력에 대한 일차적인 위험요인이라는 것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의 대처는 이 분명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경제 상황이 극도로 나빠지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시기에 가정폭력이 또한 급증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실직, 사업실패 등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존감을 해치는 부정적인 사회적 경험'이 가정폭력에 대한 일차적인 위험요인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에서 조사된 가정폭력 사범의 인구학적 특징은 가난하며, 교육수준이 낮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향이 높고, 아내의 직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Gelles, 1993; Smith, 1990; Straus et al., 1980; Hornung, McCullough, &

Sugimoto, 1981). 한국에서도 2002 년에 총 12,891 명의 남자들이 가정폭력 사범으로 경찰로부터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이들의 직업을 58 개로 분류하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직업은 무직(2,525)이고, 그 다음이 일반회사원(1,701)이며, 세 번째로 많은 빈도를 보이는 직업은 일용직 노동자(1,544)이고, 네 번째는 운전자(915)이다. 따라서 이 네 개의 직업이 전체 남성 가정폭력 사범의 51.9% 를 차지한다. 그밖에 나머지 54개 직업들은 각각 평균 1% 미만의 극소수의 빈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검찰에 송치된 가정폭력 사범들도 비슷한 직업분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폭력은 경제/사회적 수준이 한국사회에서 중하계층에 속하는 남성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남성들은 잦은 이직 및 전직, 자기개발의 실패, 사업실패, 투자실패, 부채부담, 상대적 박탈감, 사회적 편견, 사회적 모멸감, 사회적 열등감, 재정적 무능력 등과 같이 남성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부정적인 사회적 경험을 하게 될 확률이 높고, 그러한 사회적 경험에 의해 초래되는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크게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가정폭력의 일차적 원인은 생리학적 요인이나 심리적 요인, 혹은 아동기의 폭력 경험이라기보다는 주로 일부 남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능력에 대하여 좌절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하게 하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기 경험에 의하여 폭력이 행동 레파토리로 학습된 남성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존감을 손상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 그 부정적 사회경험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이다. 결혼생활의 조화와 사회적 지지

(친구, 친척, 동료, 주민, 등의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는 이 스트레스를 증폭하거나 완화시키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

현행 제도의 문제: 심리학적 관점

앞서 가정폭력의 일차적 원인이 일부 남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능력에 대하여 좌절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하게 하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에 있으며, 결혼생활의 조화와 사회적 지지(친구, 친척, 동료, 주민, 단체 등의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는 그러한 요인으로부터 초래되는 스트레스를 증폭하거나 완화시키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만약 가해자에 관하여 처벌, 격리, 권리의 제한 등을 골자로 법제도를 구성하고 운영한다면, 그러한 제도는 가해자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존감을 더욱 훼손시키고, 사회적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결혼생활의 조화를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내며, 사회적 지지의 원천인 친구, 친척, 동료, 주민, 단체 등의 지역사회로부터 가해자를 고립시켜서 더욱 더 전형적인 가정폭력사범으로 변모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가정폭력을 고착화하고 양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행히 가정폭력 사건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를 제외한 그 이후의 사건처리 단계에서 한국의 법현실은 완전히 처벌위주의 제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과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인식에 기초한 바람직한 제도로 생각된다.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이 특별히 일반 형사사건과 차별적으로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경찰에서는 가정보호사건은

모두 그 죄명에 있어서는 일반 형사법과 같은 죄명으로 입건되어 처리된다(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상준 부장판사와의 개인적 교신). 그러나 가정폭력은 일반 폭력사건과 매우 다른 특성(가족간의 갈등)을 가지기 때문에 경찰 수사단계에서 일반 형사사건과 제도적으로 차별화되지 않는 현행 제도는 신고를 접수하고 초동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에게 혼란을 야기하여 효과적인 초기대응에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즉, 현행 제도하에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가족간의 대수롭지 않은, 혹은 경찰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사소한 폭행사건'으로 간주되거나, '가족을 괴롭히는 인격파탄자의 죄질이 나쁜 폭력범죄'로 간주되는 양극단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1999 년도의 경우에 검찰에 송치된 가정폭력사건 중 약 40% 가 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으나, 일반 형사절차인 약식명령으로 처리된 비율도 18.5% 에 이른다(박미숙, 2001). 따라서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처벌위주의 정책과 교정정책이 함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2002년 법원 통계연감에 의하면(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상준 부장판사와의 개인적 교신), 가정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접수된 총 처리인원수는 5,602명으로서 그 중 2,725명(48.6%)이 보호처분을 받았고 불처분이 2,371명, 이송 8명, 기타 498명이었다. 다시 보호처분 내역을 보면 접근금지 334명, 친권행사의 제한 0명, 사회봉사/수강명령 278명, 보호관찰 754명, 감호위탁 0명, 치료위탁 1명, 상담위탁 348명, 접근금지와 보호관찰 병과 117명, 사회봉사/수강명령과 보호관찰 병과 748명, 기타 145명이었다. 보호관찰, 수강명령, 상담위탁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법원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을 기본적으로 교정 및 치유대상의 사건으로 다루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제도는 수감명령과 보호관찰 제도를 겸비하고 있고, 법원은 실제로 그 제도들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과 치료를 위하여 깊은 배려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수감명령과 보호관찰 처분에 의한 가해자의 교정은 가해자 개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개별화된 교정과 치료가 어렵고, 국가 행정기관(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의한 단기적(6개월) 개입이므로 환자의 입장에서는 치료라기보다 대체형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 효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가정 내에서 폭력 행동을 보이는 남성들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경우에 그 프로그램을 성실히 완수하는 사람의 비율이 매우 낮다(Hamberger & Hastings, 1989). 따라서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정 내 행동 레파토리를 바꾸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의지의 생성을 위해서는 가해자 개개인에 대한 개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현행 보호관찰 제도는 기능과 목적에 처벌, 감시, 관찰, 치료가 모두 혼재되어 있어서 인적, 물적 자원이 그러한 의지의 생성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집약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제도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슈는 국가 행정기관에 의해 주도되고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투입되어 교정과 갱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낙인효과(stigma effect)를 유발하여 가해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재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안: 치료적 사법이념

때때로 법과 제도는 부지불식간에 반치료적인(anti-therapeutic) 혹은 반사회적인(anti-social)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범법자들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거나 반복적인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하기도 한다. 치료적 사법이념(Therapeutic Jurisprudence)은 법과 제도가 치료적 혹은 반치료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치료적인 효과를 증가시키고, 반치료적인 효과를 감소시키도록 법제도를 변화시키는데 주목적에 있는 법철학 사조이다. 즉, 치료적 사법이념은 재판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심리적 기능과 정서적 안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재판 과정을 재구성하고, ‘치료자(therapeutic agent)’로서의 법을 모색하기 위해 법과 더불어 심리학, 정신의학, 행동과학, 그리고 범죄학과 같은 사회과학의 연구를 접목시킨 학제적인 접근을 일컫는다. 적법절차(due process)나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중요한 법철학적 가치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재판에 관여하는 개인들의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 안녕(well-being)을 촉진하는 것이 치료적 사법이념의 기본 원칙이다(Slobogin, 1996).

그러나 치료적 사법이념은 사회의 약자에 대한 인본주의적 배려 혹은 인간적 동정심을 강조하는 윤리적 이념이 아니다. 치료적 사법이념은 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선을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실천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법이 부지불식간에 사회적 병폐를 만들어낸다면, 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일한 법이 사용될 것인데, 그러한 악순환은 결국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치료적 사법이념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자각에 기초한다.

치료적 사법이념은 반치료적인(anti-therapeutic)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을 가진 실정법(substantive

rules)과 사법절차(legal procedures)를 파악하고 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판사 그리고 법정에 출두하는 경찰 관계자,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6년에 개최된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Court Management(MACM)”에서 법의 치료적 측면이 미래의 법정이 직면하게 될 우선 이슈 중의 하나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즉, 미래의 법은 사법체계에 접수된 사건을 수동적으로, 그리고 대중적(reactive)으로 처리(disposal)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악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선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소위 문제해결(problem solving)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Rottman & Casey, 1999). 이것은 약물남용, 아동과 배우자 학대, AIDS 와 같은 사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법의 책임임을 뜻한다. 판사와 법원은 그러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효과적이고, 생명과 인권의 보호를 우선시하며, 연루된 당사자들의 재활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Zimmerman, 1998). 미국의 경우, 치료적 사법이념의 관점은 현재 모든 법의 영역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인데 특히, 가정폭력 재판, 가사재판, 약물/마약 재판, 정신건강 재판과 같이 미래지향적인 문제해결이 첨예하게 중요시되는 분야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다.

치료적 사법이념이 적용된 예로써 아동학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North Carolina주에 위치한 Mecklenburg의 지방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FIRST (Families In Recovery Stay Together)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학대의 재발방지를 위해 피고들에게 치료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법원뿐 아니라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와 해당지역의 민간 유관기관들(형

원, 대학, 교회 등)이 함께 공조하여 특정한 피고인의 치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하여 판사는 적절한 치료와 회복과정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사회적 서비스의 지원을 각급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재판의 경우, 자식을 학대한 부모들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이들을 어떤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부모에 대한 평가는 약물중독 여부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상태, 가정폭력 여부 등을 포함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즉각적인 약물중독 치료를 제공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의 참여 여부를 지속적으로 법원에서 관리하며 삶의 기술, 부모로서 필요한 아동 발달에 관련된 지식들을 교육시키며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Join Together, 2002).

제 언

가정폭력을 한국사회에서 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료적 사법이념의 패러다임을 제도적 대처방안으로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치료적 사법이념의 핵심은 법원이 단지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여 행정조직으로 이관한 후 더 이상의 관심을 중단하는 종래의 피동적인 컨베이어 벨트의 한 부분과 같은 기능에서 한 단계 승화하여 범죄자의 치료와, 교정, 그리고 갱생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동기 경험에 의하여 폭력이 행동 레파토리로 학습된 남성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존감을 손상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 가정 내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고, 결혼생활의 조화와 사회적 지지체계는 부

정적 사회경험과 그것의 스트레스 반응(가정 내 폭력) 사이의 인과관계를 강화하거나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대처는 바로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로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위주의 제도는 바로 가정폭력의 원인을 국가가 제공하게 되어 반치료적인, 반사회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로 하여금 다시는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처벌위주의 정책은 오히려 사회에 잠재하는 가정폭력의 가능성을 증폭시킬 위험성이 크다.

둘째로 가정폭력 사범의 교정과 갇생을 위한 노력은 법무부와 보호관찰소 등의 행정부 조직이 주도적으로 계획, 실시, 감독하기 보다는 법원과 지역사회의 민간 복지 네트워크 사이의 직접적이고도 긴밀한 공조에 기초하여야 한다. 행정부 조직에 의한 교정 및 갇생 프로그램은 우선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대체형벌의 의미로 해석되기 쉬워서 목표하는 교정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지역사회에서도 유사한 의미로 해석되어 가해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하였을 때 또 다시 사회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사회적 경험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 위에서 소개한 미국의 FIRST 프로그램이 법원과 사회복지부, 그리고 병원 및 대학의 공조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법원이 교도행정체계가 아닌 사회복지부와 공조하여 가정폭력 사범을 교정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미국의 제도에 대하여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지역사회에 있는 대학(예를 들면, 평생교육원), 병원, 종교단체, Self-help 단체 등의 복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그러한 지역사회의 민간 복지조직들이 주도적으로 가정폭력 사범의 교정과 갇생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계

획하고 실시하며, 법원은 다른 행정조직의 조력을 받아서 민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감독, 지도, 지원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원의 이러한 적극성이 바로 치료적 사범이념의 핵심이다. 이러한 민-관 협력체계에 의하여 가정폭력 가해자가 범법자라는 사회적 낙인의 희생물이 되어 악순환의 고리에 얽매이는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사회적 적응기술을 실질적으로 습득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새로운 사회적 성취를 위한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는 그 가해자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 가정폭력을 유발하는 원인에서 가해자가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셋째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명시된 보호조치들 중에서 치료위탁과 상담위탁 제도를 현재보다 훨씬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현재 수감명령과 보호관찰 처분이 이루어지는 사례들을 점차적으로 치료위탁과 상담위탁 처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구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재원의 확보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원과 지역사회의 민간 복지 네트워크가 공조하는 체계가 마련되고, 치료와 상담이 그러한 민간 기관에서 이루어지면, 민간 기관에 대한 기부금, 기여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소요경비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도 있다. 민간 복지기관에 대한 기부금, 기여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중의 하나는 그러한 재원확보를 위한 홍보노력에 법원이 권위의식 대신 치료적 사범이념을 가지고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지원을 각급 기관에 요청하는 것이다.

넷째로 한국의 현행 제도에 포함된 보호관찰

처분은 그 목적과 기능을 보다 명료하게 초점화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사범을 위한 현행 보호관찰제도는 그 목적과 기능이 처벌인지, 감시인지, 관찰인지, 치료인지가 불분명하고, 치료기능이 목적에 포함된다면 어떤 내용과 절차를 통하여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이 목적과 기능이 애매모호한 제도는 그 다양한 목적과 기능이 모두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고, 부작용이 또한 불분명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제도가 될 수도 있다. 가정폭력 사범을 위한 현행 보호관찰제도는 그 기능과 목적을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정 내 행동 레파토리를 변화시키려는 의지' 혹은 소위 '개전의 정'을 갖게 하는데 맞추고, 모든 역량을 그 의지의 발현을 위하여 자세하고 명료하게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사범의 교정을 위하여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그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근절하려는 의지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Ganley, 1987; Sonkin, Martin, & Walker, 1985). 그러나 그러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해서 치료와 교정이 자동적으로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호관찰제도를 통하여 가해자의 행동변화 의지와 문제에 대한 책임감이 확인되면 민간 복지기관으로 이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와 상담을 받도록 하며, 그 치료와 상담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재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기능적으로 명확히 분화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과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로 심리학은 가정폭력의 원인과 기제에 대한 정확하고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법원의 감독과 지원을 받아서 가정폭력 사범의 교정과

치료를 위하여 단기간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조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한 노력의 기본 요소는 섬세함이다. 우선, 심리학은 대부분의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는 공히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약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가해자가 사회적 경험에 의하여 어떠한 심리적 상처를 경험하였는지, 그리고 가정폭력이 행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심리적 상처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은 통찰을 획득하는 방법과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두 말할 것도 없이,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심리적 상처를 헤아려서 치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심리학은 가정폭력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순환적인 반복이 이루어지는 현상 속에는 무엇인가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심리학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족에 대한 폭행은 나쁘다', '배우자와 자식은 소중하다' 혹은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다' 등의 진부한 슬로건을 인식시키려 애쓰는 등의 도식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반복되는 상호작용적인 다이내믹스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존재로서의 무능감으로 인하여 스트레스와 분노를 경험하는 남편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게 해주려는 아내의 가상한 노력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남편의 그러한 무능감을 미묘하게 자극하는 언행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러한 경우가 반복되고 누적되어 결국 폭력적인 행동이 촉발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자신의 노력이 가상하다는 것을 믿는 아내는 동일한 행동패턴을 계속할 것이고, 또 다시 폭력

의 피해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예는 한 가지 유형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 밖의 다른 유형의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심리학은 실제 현상에 기초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밀하고 섬세하게 구조화된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결 론

가정폭력은 아동기 경험에 의하여 폭력이 행동 레파토리로 학습된 남성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존감을 손상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이고, 결혼 생활의 조화와 사회적 지지는 이 스트레스를 증폭하거나 완화시키는 완충역할을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가진다. 가정폭력 사범의 교정을 위한 한국의 현행 제도는 교정과 치료가 교도행정기관에 의해 주도되므로 환자의 입장에서 치료라기보다 대체형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 효과를 낙관하기 어렵고, 지역사회에서 낙인 효과를 유발하여 재재응을 어렵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대처는 치료적 사범이념의 패러다임을 제도적 대처방안으로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치료적 사범이념의 핵심은 법원이 지역사회 및 다른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범죄자의 치료와, 교정, 그리고 갱생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고의 제안들은 가정폭력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와 치료적 사범이념의 관점에서 조망된 것들이다. 가정폭력의 방지를 위한 본 논고의 제안을 요약하면, '치료자'로서의 법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중요

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보호관찰 제도를 축소하되, 그 대신 그 기능과 목적을 교정과 치료를 위한 필수적인 심리적 기반('개전의 정')을 비교적 단기간 내에 확보하는 것으로 명료화, 전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보호관찰 제도는 민간에서 수행될 교정과 치료가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 예비과정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개혁적 조치에 의하여 행정조직과 민간 조직이 각자의 전문성과 장점에 집중하는 전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원이 전체 시스템을 주도하는 것이 치료적 사범이념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궁극적으로 줄이는 바람직한 방안인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박미숙 (2001). 가정폭력관련 법률의 효율성 제고 방안. 형사정책연구 제 12권 제 1호.
- 정춘숙 (1999).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주년과 여성인권.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 "가정폭력방지법, 그 평가 및 대안".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 Abram, K. M. (1989). The effect of co-occurring disorders on criminal careers: Interaction of antisocial personality, alcoholism, and drug disor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12, 133-148
- Anderson, K. L. (1997). Gender, status, and domestic violence: An integration of feminist and family violence approach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655-669.
- Archer, J. (1991). The influence of testosterone on human aggression.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 82, 1-28.
- Beven, E. & Higgins, D. J. (2002). Is domestic violence learned? The contribution of five forms of child maltreatment to men's violence and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Violence*, 17, 3, 223-245.
- Booth, A. & Dabbs, J. (1993). Testosterone and men's marriages. *Social Forces*, 47, 334-355.
- Burrowes, K., Halles, R., & Arrington, E. (1988). Research on the biologic aspects of violence.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11, 499-507.
- Cate, R. M., Henton, J. M., Koval, J., & Christopher, F. S., & Lloyd, S. (1982). Premarital abuse: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Issues*, 3, 79-90.
- Coccaro, E. F., Siever, L. J., Kalr, H. M., Maurer, G., Cochrane, K., Cooper, T. B., Mohs, R. C., & Davis, K. (1989). Seroternogic studies in patients with affective and personality disorder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6, 587-598.
- Collins, J. (1986). The relationship of problem drinking to individual offending sequences. In A. Blumstein, J. Cohen., J. Roth., & C. Wisner (Eds.), *Criminal Careers and Career Criminals* (pp. 125-176).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Dabbs, J. M., Jr., Frady, R. L., Carr, T. S., & Besch, N. F. (1987). Saliva testosterone and criminal violence in young adult prison inmates. *Psychosomatic Medicine*, 49, 174-182.
- Dabbs, J. M., Jr., & Morris, R. (1990). Testosterone, social class, and antisocial behavior in a sample of 4,462 men. *Psychological Science*, 1, 209-211.
- Dietz, T. L. (2000). Disciplining children: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Child Abuse & Neglect*, 24, 12, 1529-1542.
- Fagan, R., Barnett, O., & Patton, J. (1988). Reasons for alcohol use in maritally violent men.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14, 371-392.
- Farrington, K. M. (1986). The application of stress theory to the study of family violence: Principles,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 131-148.
- Ganley, A. (1987). Perpetrators of domestic violence: An overview of counseling the court-mandated client. In D. J. Sonkin (Eds.), *Domestic Violence on Trial: Psychological and Legal Dimensions of Family Violence* (pp. 155-173). New York: Springer.
- Gelles, R. J. (1987). *Family Violence*. Newbury Park, CA: Sage.
- Gelles, R. J. (1989). Child abuse and violence in single parent families: Parent absence and economic depriva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 492-501.
- Gelles, R. J. (1993a). Through a sociological lens: Social structure and family violence. In R. J. Gelles & D. R. Loseke (Eds.),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Newbury Park, CA: Sage.
- Gelles, R. J. (1993b). Alcohol and other drugs are associated with violence: They are not its cause. In R. J. Gelles & D. R. Loseke (Eds.),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Newbury Park, CA: Sage.
- Hamberger, L. K. & Hastings, J. E. (1989). Counseling male spouse abusers: Characteristics of treatment completers and dropouts. *Violence and Victims*, 4, 275-286.
- Hotaling, G. T. & Sugarman, D. B. (1986). An analysis of risk markers in husband to wife

- violence; The current state of knowledge. *Violence Victims*, 1, 101-124.
- Julian, T. & McKenry, P. (1989). Relationship of testosterone to men's family functioning at mid-life: A research note. *Aggressive Behavior*, 15, 281-289.
- Kalmuss, D. (198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agg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11-19.
- Kalmuss, D. & Seltzer, J. A. (1986). Continuity of marital behavior in remarriage: The case of spouse abus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113-120.
- Kantor, G. K. & Straus, M. A. (1987). The "drunken bum" theory of wife beating. *Social Problems*, 34, 213-230.
- Lane, K. E. & Gwartney-Gibbs, P. A. (1986). Violence in the context of dating and sex. *Journal of Family Issues*, 6, 45-59.
- Lindman, R., von der Pahlen, B., Ost, B., & Erikson, C. J. (1992). Serum testosterone, cortisol, glucose, and ethanol in males arrested for spouse abuse. *Aggressive Behavior*, 18, 393-400.
- Makepeace, J. M. (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30, 97-102.
- Mankowski, E. C., Haaken, J., & Silvergleid, C. S. (2002). Collateral damage: An analysis of the achievement and unintended consequences of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s and discours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7, 2, 167-184.
- Martin, S. E. (1992). The epidemiology of alcohol-related interpersonal violence. *Alcohol Health and Research World*, 16, 230-237.
- McKenry, P. C., Julian, T. W., & Gavazzi, S. M. (1995). Toward a biopsychological model of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307-320.
- Meyer-Bahlburg, H. F. L. (1981). Androgens and human aggression. In P. Brian & D. Benton (Eds.), *The Biology of Aggression* (pp. 263-290). Alphen ann den Rijn, The Netherlands: Sijhoff & Noordhoff.
- Milner, J. S. & Chilamkurti, C. (1991). Physical child abuse perpetrator characteristic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6, 345-366.
- O'Leary, K. D. (1993). Through a psychological lens: Personality traits, personality disorders, and levels of violence. In R. J. Gelles & D. R. Loseke (Eds.),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pp. 7-30). Newbury Park, CA: Sage.
- Pernanen, K. (1976). Alcohol and crimes of violence. In B. Kissin, & H. Bagleiter (Eds.), *The Biology of Alcoholism: Vol. 4. Social Aspects of Alcoholism* (pp. 351-444). New York: Plenum.
- Rada, R. (1978). *Clinical Aspects of the Rapist*. New York: Grune & Stratton.
- Schuerger, J. M. & Reigle, N. (1988). Personality and biographical data that characterize men who abuse their wiv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 75-81.
- Seltzer, J. A. & Kalmuss, D. (1988). Socialization and stress explanations for spouse abuse. *Social Forces*, 67, 2, 473-491.
- Slobogin, C. (1996). *Therapeutic Jurisprudence: Five Dilemmas to Ponder*. Carolina: Academic Press.
- Sonkin, D. J., Martin, D., & Walker, L. E. A. (1985). *The Male Batterer: A Treatment Approach*. New York: Springer.
- Straus, M. A. (1980). Social stress and marital

- violence in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familie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347, 229-250.
- Straus, M. A., Gelles, R. J., & Steinmetz, S. K. (1980). *Behind Close Doors: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New York: Basic Books.
- Steinmetz, S. K. (1987). Family violence: Past, present, and future. In M. B. Suddman & S. K. Steinmetz (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pp. 725-766). New York: Plenum.
- Tolman, R. & Bennett, L. (1995). A review of quantitative research on men who batte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 87-118.
- Udry, J. R. (1989). Biosocial models of adolescent behavior problem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 Virkkunen, M. & Linnoila, M. (1993). Brain serotonin, type II alcoholism and impulsive violenc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11, 163-169.
- Winslow, J., Ellingboe, J., & Miczek, K. (1988). Effects of alcohol on aggressive behavior in squirrel monkeys: Influence of testosterone and social context. *Psychopharmacology*, 95, 356-363.
- Winslow, J. & Miczek, K. (1985). Social status as determinant of alcohol effects on aggressive behavior in squirrel monkeys. *Psychopharmacology*, 85, 167-172.
- Yllo, K. A. (1993). Through a feminist lens: Gender, power, and violence. In R. J. Gelles & D. R. Loseke (Eds.),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pp. 47-62). Newbury Park, CA: Sage.

1 차원고접수일 : 2003. 8. 21

최종원고접수일 : 2004. 2. 3

Legal-systematic alternative to domestic Violence: Therapeutic Jurisprudence

Kwang-Bai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University

Hyung-KI Ji

Forensic section,
S.P.P.O. in Korea

A review of literature revealed that damaged self-confidence of men as social agents may be the primary, if not proximal, cause of domestic violence. Accumulated damages in social confidence and self-assurance may be moderated by action repertoire acquired during childhood, and mediated by adulthood circumstances such as marital discords and the lack of social support to result in the typical cycle of violence and subsequent feeling of remorse. The present treatments for the domestically violent men in Korea seem to be ineffective to reduce the number of incidents in the society because the treatments are viewed as punishments by the men, damage their social confidence further by stigmatizing them in the community, and destroy their social resources and support systems. It was suggested in this paper to reduce the role of law enforcement and correctional administration to rehabilitate the currently violent men. At the same time, it was also suggested for the Korean court to implement the paradigm of Therapeutic Jurisprudence in handling domestic violence cases. It was argued that the court should take active roles as a healing and rehabilitating agent by cooperating with non-government community establishments such as hospitals, universities and self-help organizations. The reasons and implications of those suggestions were discussed in detail.

key words : domestic violence, social confidence, correctional administration, therapeutic jurisprudence